

# 청산 매뉴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 머 리 말

중국은 2002년 이래 우리나라의 제1위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2008년 3월말 현재 투자 금액은 233억 달러, 진출기업 수는 1만 8천여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금액 기준으로는 24%, 기업 수 기준으로는 46%를 차지하여 중국이 갖는 중요성을 수치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중국정부의 정책기조가 성장에서 안정 및 균형발전으로 전환되면서 그간의 무제한적 외자유치에서 선별적 투자유치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가 축소되고 노동, 환경, 토지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금년 초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에 의해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노동집약 업종에 진출한 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KOTRA는 이러한 경영리스크에 대한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중국 주재 4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칭다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경영리스크지원데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진출기업의 노무, 세무, 회계 등의 애로사항과 중국으로부터의 청산 철수이전 등에 대해 상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 경영환경의 악화와 경쟁력 상실 등에 따른 청산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청산절차의 복잡성과 부담금의 소급적용, 사전 대응과 준비 부족 등으로 소수이지만 무단 철수 사례가 발생함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으며, 이는 해당하는 기업과 경영인은 물론 다른 선의의 우리 기업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진출 기업들은 어렵더라도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합법적이고 명예로운 청산을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본 매뉴얼이 그러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중국의 복잡한 법규를 심층 분석하여 본 매뉴얼을 준비해 주신 중국지역본부, 중국 주재 무역관, 그리고 금두울사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  
KOTRA Global KOREA 본부장  
민 경 선

## ● 목 차

### I. 청산의 개요 ..... 1

1.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 폐지 / 1
2. 청산방법과 회사법상의 청산 차이점 / 2

### II. 청산의 기본절차 .....5

1. 회사해산 사유 / 5
2. 신청 전 단계 / 6
3. 해산신청 / 7
4. 관련부문에 통지 / 9
5. 청산조의 성립 / 9
6. 공고 및 채권자에게 통지 / 11
7. 채권자의 채권신고 / 11
8. 채무변제 순위 및 잉여재산 분배 / 12
9. 청산보고의 작성 및 등록 / 13
10. 세관등기 말소 등 / 14
11. 말소수속, 영업허가증 폐기 등 / 14

### III. 청산과정 중의 세금문제 .....15

1. 기본절차 / 15
2. 세금항목 / 16

### IV. 청산방법 중 주의해야 할 규정 .....19

### V. 맺음말 .....20

## I. 청산의 개요

### 1.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의 폐지

청산이란 회사를 해산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 외상기업의 청산절차는 1996년 7월 9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이하 ‘청산방법’으로 함)이 적용되었으나, 2008년 1월 15일 청산방법이 폐지되면서 2005년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이하 ‘회사법’으로 함)에 의해 대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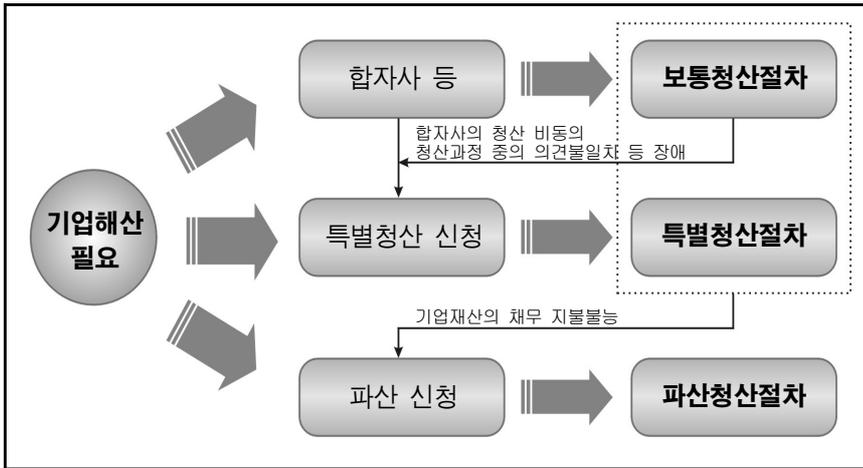
따라서 이전에는 중국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이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청산을 진행하였으나, 이제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청산방법이 폐지된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기타 외상기업 관련 법규의 청산조항들은 여전히 수정이 되지 않는 등 중국 전국적으로 새로운 청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도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해시외자위를 통해 문의한 결과, 청산방법이 폐지되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전의 청산방법의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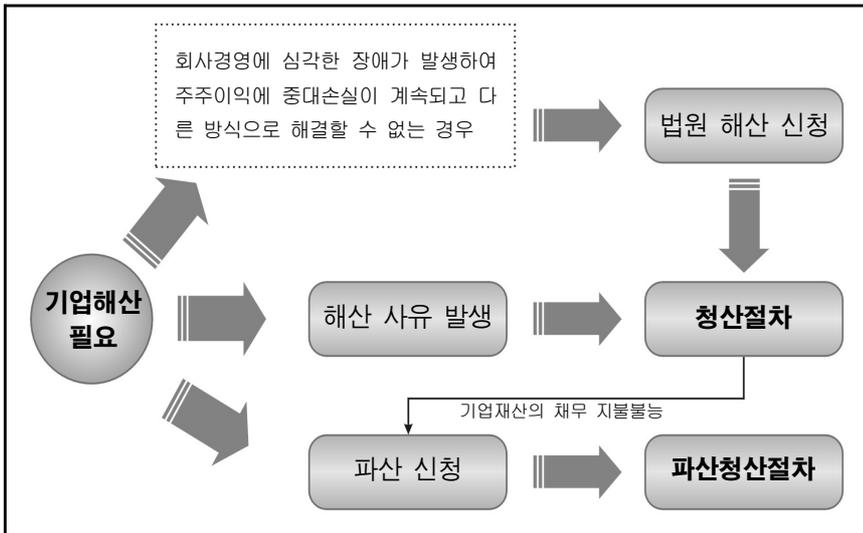
즉 일정기간 동안 중국 각 지역마다 회사법 적용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곧이어 관련한 세부지침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회사법과 외상투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정리한 이하의 청산절차를 참고로 하되, 앞으로 중국 중앙정부 및 각 지역 정부의 동향에 유의해야 하며 사전에 각 지역 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 2. 청산방법과 회사법상의 청산 차이점

【청산방법의 구 청산제도 간략도】



【회사법상의 청산 간략도】



<p><b>청산방법의 구 청산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방법의 폐지 전에는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을 <b>보통청산, 특별청산</b>으로 나누었음.</li> <li>• <b>보통청산</b>이란 외상투자기업이 청산 시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였음.</li> <li>• <b>특별청산</b>이란 기업이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업 최초 투자비준기관이 기업이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청산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하였음.</li> <li>• 보통청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이사회, 투자자 혹은 채권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었음.</li> <li>• 단, 특별청산의 경우 법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관련 정부기관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li> </ul>
<p><b>회사법에 따른 청산제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청산, 특별청산의 구분이 없어짐.</li> <li>• 청산기간을 규정하지 않음.</li> <li>• 주주의 해산청구권을 규정.</li> <li>• 외상투자기업도 중국내자기업과 동일하게 기업법의 청산관련 규정을 적용</li> <li>• 단, 외상기업 관련 법규 중 청산조항이 수정되지 않았고, 회사법상의 관련 법규도 구체적이지 않아, 앞으로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수정될 것으로 보여짐.</li> <li>• 당분간 새로운 법률적용을 위한 과도기적 기간으로서 지방지역마다 적용상 차이를 가질 가능성이 큼.</li> </ul>

**【유의점】 - 청산방법의 폐지와 회사법의 적용**

- 2008년 1월 15일의 국무원령에 의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에 적용되던 청산방법이 폐지되었고, 앞으로 외상투자기업의 청산도 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됨.
- 단 외상기업 관련 법률 중 외상기업 청산과 관련한 조항들은 수정되지 않았고, 회사법의 적용 시 여러 가지 불명확한 점들이 있음.
- 또한 중앙기관에서 내려온 법률법규 등이 중국 각 지방지역에서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도기기간이 필요한 것이 보편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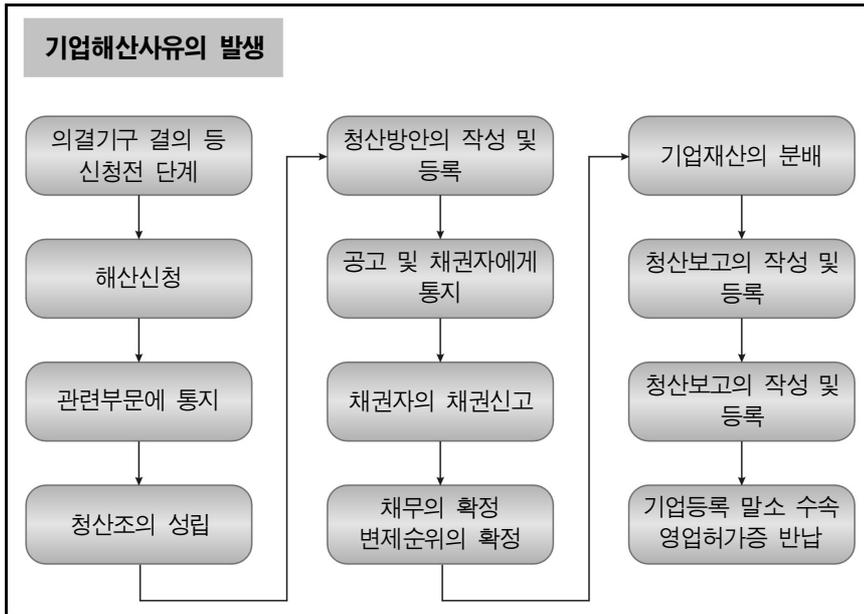
현상임. 따라서 외상기업청산 회사법 적용도 일정 기간의 과도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즉 청산을 준비 중인 외상기업은 각 지방 정부부문에 정확한 확인을 거쳐야 할 것임.
- 청산 과정에서 기업재산이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 청산조(폐지된 청산방법상에서는 ‘청산위원회’로 규정하였음)는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파산 관련 절차에 따라 ‘파산청산’을 진행해야 함.
- 기업이 파산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에 따라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됨. 파산청산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주주, 관련기관이나 관련자를 소환하여 파산관리인이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말함.

## II. 청산의 기본절차

청산방법의 폐지로 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절차는 차이가 크지 않으며, 단 회사법 적용 초기단계에 있어 기타 관련법규와의 조정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하의 청산절차를 참고로 하되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소재지의 정부부문에 지속적인 문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회사청산의 주요 절차도】



### 1. 회사해산 사유

외상기업은 일반적으로 경영기한 만료, 심각한 경영상 손실로 인한 해산 결정,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인한 경영불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합병 일방이 합병기업협의,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합병기업이 그 경영목

적을 달성할 수 없고, 발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사유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2. 신청 전 단계

기업은 의결기구를 통해서 청산을 결정하게 된다. 청산의 결의는 동사회 등의 의결기구 전원일치로 통과된다. 청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단계에서 충분한 준비와 협의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유의점】 - 준비단계에서 유의 및 고려사항

합자사 및 채권자, 노동자 등과 청산과정 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청산기간이 길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거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채권자와의 사전협의** : 청산개시 전에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협의 혹은 청산기간 중에 채권등록을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줄여야 청산절차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
- **청산방안에 대한 협의** : 청산방안은 청산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청산 코스트, 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산개시 전 기업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본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음.
- **등기말소처분에 대한 주의** : 실무 중 청산 준비상태에 있는 기업이 청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공상년도검사를 태만히 하여 공상등기기관으로부터 등기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음. 등기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계획에 따른 청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업해산에 관한 심의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기 전에 기업공상년도검사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반드시 기업공상년도검사 등 필요한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 **청산 중 영업문제** : ‘회사법’에 의하면 청산기간 중 기업은 새로운 경영활동,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청산개시일을 기업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3. 해산신청

#### 1) 외상기업관련 법률상의 해산사유

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은 기업 설립 시 심사비준을 받았던 기관(이하 '원심사비준기관'으로 함)에 기업해산을 신청해야 한다.

외상기업이 해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및 ≪외자기업법실시세칙(外资企业法实施细则)≫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기업해산사유에 부합해야 한다.

#### A) 외자기업의 경우

외자기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된다.

- A. 외자기업의 경영기한 만료
- B. 심각한 경영상 손실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
- C.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경영불가
- D.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E. 중국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을 훼손하여 법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

B, C의 경우 기업종료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일이 기업의 종료일이 된다. (외자기업법실시세칙 제72조)

#### B) 중외합자, 합작회사의 경우

중외합자, 합작기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된다.

- A. 외자기업의 경영기한 만료
- B. 심각한 경영상 손실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C. 합영 일방이 합영기업협의,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D.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경영불가
- E. 합영기업이 그 경영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발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 F. 기타 합영기업계약,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B, D, E, F의 경우 동사회가 해산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며, C의 경우 계약의 일방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제90조)

기업해산 신청 시에 원심사비준기관에 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들을 제출한 후 해산을 동의하는 비복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원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일로부터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	신청서 申请书	이사회 결의 董事会决议	청산위원회 성원 명단 清算委员会成员名单	투자자의 계약 投资者协议
	직원 배치 설명 职工安置说明	형자보고 验资报告	사전 종결 계약, 정관 提前终止合同章程	회계심사보고 审计报告
	이사회 명단 董事会名单	원 비준증서 原批准证书	원 계약, 정관 原合同章程	기타 법률이 정하는 서류

주) 상기 필요서류는 상해시외자위원회의 요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신청 시에 해당지역 심사비준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회사법상의 주주 해산청구

회사경영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여 주주이익에 중대손실이 계속되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주주결의권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주주 간 또는 회사관리층 간의 이익충돌과 마찰 등으로 회사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주총회 또는 동사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는 등 회사의 모든 사무처리가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 주주이익에 커다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이러한 상황이 협상, 중재 등의 내부적인 해결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주주의결권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회사법 제181조 5항, 제183조)

### 【유의점】 - 청산기간과 특별청산

- 영업집조가 법에 의해 말소되거나 영업을 취소되는 경우, 이전의 청산 방법에서는 특별청산절차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회사법의 적용으로 특

별청산의 구분이 없어짐.

- 폐지된 청산방법에서는 청산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법에서는 청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단 후속지침들이 제정되기 전까지 실무적으로 이전의 청산방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청산기간과 특별청산에 유의해야 할 것임.

#### 4. 관련부문에 통지

- 1) 외상투자기업은 청산개시 전에 세관, 세무기관 등 관련부문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 2) 만약 청산기업에 국유자산이 있다면 자산관리행정주관부문에 통지해야 한다.

#### 5. 청산조의 성립

- 1) 기업의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 청산조를 성립해야 한다.(회사법 제184조)

##### A) 청산조의 구성

기업은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사법에 의하면 그 구성인원은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조는 주주로 구성되고, 주식유한회사의 청산조는 동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회사법 제184조)

기한을 넘겨 청산조를 성립하고 청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청산조 구성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다.(회사법 제184조)

##### B) 청산조의 권한

청산조는 청산기간에 아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회사법 제185조)

- ① 기업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방안 작성
- ② 채권자를 위한 공고, 채권자에 대한 서면통지
- ③ 청산과 관련된 기업의 현안 업무처리
- ④ 미납세금 및 청산과정 중 발생한 세금 청산
- ⑤ 채권, 채무 정리
- ⑥ 기업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 ⑦ 외상투자기업 대표로 민사소송 참가

2) 이렇게 구성된 청산조는 회사의 청산과 관련된 현안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A) 청산조는 회사의 채권채무의 정리를 처리한다. 즉 주요하게 채무의 상환, 채권의 회수 및 미종료된 업무의 종결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B) 청산조는 잉여재산을 분배한다. 즉 청산비용, 직원의 임금, 사회보험비용과 법정보상금, 미납세금의 납부 후에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배분하게 된다.
- C) 청산기간 동안 회사는 독립적으로 민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청산조는 회사를 대표하여 대외업무를 책임진다. 만약 청산기간동안 회사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청산조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3) 청산조는 그 성립일로부터 10일 내 청산조구성원, 청산조책임자 명단을 회사등기기관에 등록해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회사등기관리조례 제42조)

**【유의점】 - 청산방안의 작성**

- 청산과정에 있어서 청산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산기한이 길어지는 등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산 코스트, 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산개시 전 기업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

본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청산에서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청산방안은 전문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자문을 기초로 수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 6. 공고 및 채권자에게 통지

- 1) 청산조는 성립일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60일 내 신문에 공고문을 게재해야 한다.(회사법 제186조)
  - A) 청산조는 주소가 명확한 채권자에게 그 성립일로부터 10일 내 서면통지를 해야 함.
  - B) 청산조는 주소가 불명확한 채권자의 경우, 그 성립일로부터 60일 내 신문에 회사의 해산사항,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게재해야 함.

### 【유의점】 - 채권자 통지

-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공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등 기기관은 개정을 명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7. 채권자의 채권신고

- 1)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청산위원회에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통지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청산조에 채권보고를 해야 한다.(회사법 제186조)
- 2) 채권자는 위의 규정된 기한 내에 채권보고를 해야 하며, 아울러 채권액 및 채권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신고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A) 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잉여재산의 배분완료 전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
  - B) 잉여재산 배분된 후에는 채권포기로 간주
- 3) 청산조는 이에 따라 신고된 채권에 대해 등록을 진행한다.

## 8. 채무변제 순위 및 잉여재산 분배

### 1) 청산비용과 기타 채무의 변제

청산기업은 청산재산에서 청산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에 기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청산비용, 채무변제 순위】

청산비용	① 외상투자기업 청산재산의 관리, 매각,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고, 소송, 중재비용 등
	③ 청산조 구성원 보수, 변호사 비용 등 청산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
기타채무 우선순위	제1순위 : 종업원의 임금, 사회보험비용
	제2순위 : 미납된 세금
	제3순위 : 기타 채무 등

### 2) 잉여재산의 분배

청산재산에서 청산비용과 기타 채무를 변제한 후에 잉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재산을 분배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소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회사법 제187조)

#### 【유의점】 - 경제보상금 및 청산비용 지불

- 기업청산 시 대부분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노동계약 해지에 따르는 경제보상금 문제가 발생하게 됨. 또한 경제보상금은 직

원의 급여로 인정되므로 청산재산에서 우선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 제1순위로 경제보상금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여야 함. 따라서 합자, 합작회사의 경우 청산절차 개시 전 투자자 각자가 자기 사업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노동계약 해제 및 경제보상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처리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청산조는 청산개시 전에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협의 혹은 청산기간 중에 채권등록을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줄여 청산절차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업재산을 배분할 수 없음. 즉,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기업재산만을 투자자의 투자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음.
- 재산을 은닉하고,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리스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개정을 명하고 은닉재산 또는 채무상환 전 분배재산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직접책임이 있는 주요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9. 청산보고의 작성 및 등록**

- 1) 청산조는 청산절차의 개시 시에 작성한 청산방안에 따라 청산업무를 끝낸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청산보고서는 회사의 주주총회 등 의결기구의 확인을 받거나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회사등기기관에 보고하고 회사등기말소 신청을 해야 하며 회사종료를 공고해야 한다.

**【유의점】 - 청산보고서의 미등록 책임 등**

- 청산조가 규정에 따라서 회사등기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청산보고서에 중요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한 경우 회사등기기관

이 그 개정을 명함.

- 청산조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횡령, 불법소득, 회사재산을 유용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회사재산의 반환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10. 세관등기 말소 등

- 1) 세무기관과 세관에 각각 등록말소를 진행해야 한다.
- 2) 공상등기기관에 기업등록 말소수속을 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 체납금,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영수증 및 기타 세무증서를 세무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 3) 관련 납부증명 및 반납증명을 가지고 원 세무관리기관에 세무등기 말소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 11. 말소수속, 영업허가증 폐기 등

청산조는 청산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의 청산조 책임자가 서명한 등기말소 신청서를 청산보고서와 함께 기업등기기관에 제출하여 기업등록말소를 진행한다.

【기업등록말소에 필요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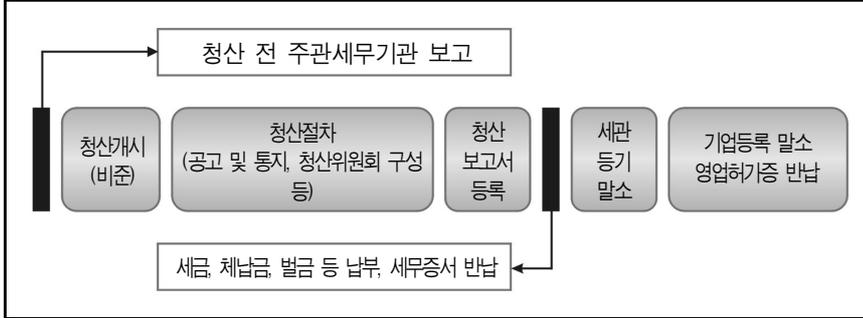
<b>일반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b>	기업 청산조 책임자 서명의 <말소등기신청서> 由公司清算组负责人签署的 《注销登记申请书》	세무기관, 해관에서 제출한 세금 완성 증명 税务机关、 海关出具的完税证明	원 심사비준기관의 말소를 비준하는 문서 原审批机关的批准注销的文件
	청산보고 清算报告	이사회 결의 董事会决议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

주) 상기 필요서류는 상해시공상행정관리국의 요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신청 시 해당지역 심사비준기관에 확인이 필요함.

### III. 청산과정 중의 세금문제

#### 1. 기본절차

【주요 청산절차 중의 세금관련 절차】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칙(稅收征收管理法實施細則)》 제50)조<sup>1)</sup>에 의하면 기업이 청산할 경우, 청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미결제 부분의 세금이 있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의 청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상등기기관에 기업등록말소수속을 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 체납금,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영수증 및 기타 세무증서를 세무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납부증명 및 반납증명을 가지고 원 세무관리기관에 세무등기 말소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1) 《稅收征收管理法實施細則》第五十條 納稅人有解散、撤銷、破產情形的，在清算前應當向其主管稅務機關報告；未結清稅款的，由其主管稅務機關參加清算

## 2. 세금항목

### 【청산과정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세금항목】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세금	청산 시 세금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미납상태인 세금
	청산기간 중 계속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세금혜택반환	'2면3감반(兩免三減半)'의 세제 우대 반환
	재투자세금반환(再投資退稅) 혜택의 보충납부
	지방재정혜택정책에 대한 반환 또는 보충납부
수입증치세 및 관세	수입기계 등 제품의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 보충납부
영업세 및 증치세	기업 청산 중 재산처분에 대한 납부
기업소득세	청산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납부

#### 1)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세금

- ① 청산 시 세금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미납상태인 세금
- ② 청산기간 중 계속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 2) 세금혜택반환 문제

외상투자기업이 경영기한만료 전에 청산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① 기업이 받고 있는 '2면3감반(兩免三減半)'의 세제 우대에 대해서는 청산으로 인하여 기업의 실제경영기한이 10년 이하로 될 경우, 이미 혜택을 받은 부분의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함.
- ② 기업의 재투자로 인하여 재투자세금반환(再投資退稅) 혜택을 받은 기업은 청산으로 인하여 재투자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이미 반환된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함.
- ③ 기타 지방재정혜택정책으로 인하여 받은 혜택 등도 상기 ①, ②와 같이 반납 혹은 보충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음.

3) 수입증치세 및 관세

수입기계 등 제품이 해관의 관리감독 기한 내에 있을 경우, 기업의 청산으로 인하여 관련 해관의 동의를 받고 해당 제품을 국내 내자회사에 매각, 양도 혹은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기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보충 납부해야 한다.

- ① 감면세 수입제품을 국내의 기타 내자회사 혹은 관련 감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회사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상용기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나머지 부분에 관한 수입관세를 해관에 보충 납부하여야 함
- ② 국내의 기타 감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심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해관의 결제이전 수속을 마치고 나면 양도받은 기업은 계속하여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해관의 비준을 받은 외국투자자는 원 면세수입제품을 경외로 다시 가져 갈 수도 있음<sup>2)</sup>

**【유의점】 - 세금반환액의 확인**

세금혜택정책으로 받은 세금혜택 부분과 수입증치세 및 관세문제로 세금혜택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산결정을 하기 전에 우선 반환하여야 할 세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청산 이외의 주식양도 등 기타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기업소득세** : 기업 청산 중에서 재산처분을 할 경우, 영업세 및 증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업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海关对外商投资企业进出口货物监管和征免税办法**》第三十一终止或解除合同的外商投资企业，海关对其监管年限内的减免税进口货物，按以下规定办理：

(一) 留给合营中方继续使用或转让、出售给国内单位的，海关应当按其使用年限折旧补税。  
 (二) 如转让给国内其他可享受同等优惠待遇的外商投资企业使用的，经审批机关批准并办结海关结转手续后，可以继续享受减免税优惠。  
 (三) 经海关核准，允许合营外方将原免税进口货物退运出境。

여기에서 말하는 청산소득은 기업 청산시의 전부 자산 혹은 재산에서 청산비용, 손실, 부채, 기업미배당이윤, 공익금, 공적금(公積金) 및 실제 납부한 자본을 공제한 부분을 의미한다.

**【유의점】 - 세금부분의 구체적 분석**

세금부분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분석은 각 청산기업의 경영 및 재무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상술한 일반적인 검토보다 지역별, 기업별 상황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사전에 세금문제에 관하여 전문 회계사사무소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

### IV. 청산방법 중 주의해야 할 규정

과도기 기간 중 각 지역에서 여전히 실무상 청산방법에 따라서 시행하거나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전히 이하의 청산방법 규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p><b>특별청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청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이사회, 투자자 혹은 채권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음.</li> <li>• 특별청산은 보통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의 자주성이 발휘되기 힘들며, 실무적으로도 관련 정부기관의 책임권한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진행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li> <li>• 중국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을 훼손하여 법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 청산방법에서는 특별청산 절차를 요구</li> <li>• 기업공상년도검사 등 필요한 수속을 진행에 유의하여 특별청산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ul>
<p><b>청산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상투자기업의 청산기한은 원칙적으로 최고 180일을 넘지 못함.</li> <li>• 특수한 정황으로 청산기한을 연기해야 할 경우, 청산위원회는 청산기한 만료 15일 전에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기관에 청산기한 연기 신청</li> <li>• 연장기한은 최고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p><b>기업재산 처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개시 전 180일 내에 발생한 이하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li> <li>• ① 기업재산의 무상양도, ② 비정상적 덤핑가격에 의한 기업재산의 매각, ③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④ 채무의 만기도래 전 상환, ⑤ 청산기업 채권의 포기 등</li> <li>• 따라서 관련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청산개시일을 주의 깊게 계산하여 처분해야 함.</li> </ul>

## V. 맺음말

청산방안의 폐지로 인하여 외상기업청산은 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법 및 외상기업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기업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및 이러한 법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단 청산방안이 폐지된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각 지역에 새로운 청산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 청산절차를 참고로 하되 각 지방정부 또는 법률사무소 등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산청산’의 경우, 구체적 절차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에 따르게 되며, 인민법원이 주요한 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중국청산, 파산제도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외상기업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계약법, 환경법 및 세금분야의 정책 등 중국의 기업 경영환경이 날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철수의 한 방법인 청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법률적인 측면 이외에도 중국의 현실상황을 이해하고 실무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기업청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완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b>金杜律师事务所</b> <b>KING &amp; WOOD</b> P R C L A W Y E R S	上海市淮海中路1045号淮海国际广场28-29楼 邮编200031
	28-29/F, Huai Hai Plaza, 1045 Huai Hai Road (M), Shanghai 200031, China Tel: (8621) 24126000 Fax: (8621) 24126150 / 24126250 www.kingandwood.com

## 청산 매뉴얼

---

---

발행인 || 흥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8년 5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전화 || 3460-7114(대표)  
인쇄 || 신우사(2273-4111)

---

---

(비매품)